

의안번호	2200360
의 퇴 인	김남희의원
회 답 일	2024.6.19.
추 계 번호	24B0616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1조의 22(병원 간병인에 대한 특별) 신설	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간병인 중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8제1항의 간병인 소개사업자를 통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(이하 “병원 간병인”이라 한다)은 제91조의15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봄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1조의 22(병원 간병인에 대한 특별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은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‘노무제공자’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¹⁾

1)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
제91조의16(다른 조문과의 관계)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.

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.

- 개정안은 병원 간병인을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간병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(이하 ‘산재보험’)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임
 - 개정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00361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
- 개정안의 시행으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병원 간병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간병서비스를 소개·알선해주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산재보험기금의 보험료 수입이 확대되고, 보험료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재보험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,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
 - 첫째, 현행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‘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’에 ‘보험료율’을 곱하여 산정됨²⁾
 - 그러나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은 보수액 산정에 필요한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험료 산정에 관해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³⁾
 - 또한 병원 간병인의 소득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소득과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

2)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
제48조의6(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)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(산재보험료에 한정한다)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3)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

제48조의8(병원 간병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) ② 제1항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「소득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되,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.

- 둘째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병원 간병인의 노동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이유미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